

송의역 라온프라이빗 스카이브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개요

1) 공급규모

- 가.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79번지 일원
- 나.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0층 3개 동 총 440세대(조합원공급 270세대) 중 일반분양 170세대
- 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 총 15세대

2) 기관별 공급세대수 배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10% 범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59A	59B	84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괄호안의 숫자는 예비입주자 세대수)	국가유공자	1	1	1	3	
	장기복무 제대 군인	1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	2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3	
	장애인	인천광역시	2	1	1	4
		경기도	1	-	-	1
		서울특별시	1	-	-	1
	합 계		8	4	3	15

-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2. 공급 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 고 사 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5.08.22.(금)		당사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회신	2025.08.26(화) 10:00까지		당사 담당자에게 명단 송부(공문참조)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5.09.01.(월)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건본주택 방문청약	2025.09.01.(월) 10:00~14:00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5.09.09(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 홈페이지
정당계약일	2025.09.22.(월) ~ 2022.09.24.(수)		당사 건본주택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3.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 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무주택 요건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1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00 1594 1386 1809"> <thead> <tr> <th>구 분</th> <th>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4.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